

지역개발연구 제36권 제1호, 2004년 6월, pp.223-240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제도의 존재 논쟁*

정진필**, 김일태***

본 논문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민간기업의 자산재평가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2001년부터 폐지된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제도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부문에서 자산재평가제도의 존재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평가 자산가액을 활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증액시켜 요금인상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때 민간기업의 자산재평가와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이를 획일적으로 일시에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존속기한과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자산재평가제도의 존재, 자산재평가법, 민간기업, 지방공기업

I. 서론

1958년 1월 처음 제정되어 운영되어왔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제도’가 민간기업부문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2001년부터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제도가 존속됨으로써 학계와 관련업계간에 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는, 민간기업의 회계정보와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동일하게 다룬다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무시한 채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단순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상 시기상조이며, 이를 모든 대상업체에 대해

* 본 논문은 한국관리회계학회와 행정자치부 공동후원으로 진행된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의 제 2장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제1저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전화: 062-530-1473, e-mail: cpchung@chonnam.ac.kr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공동저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전화: 062-530-1550, e-mail: kit2603@chonnam.ac.kr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하기에도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¹⁾ 즉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적절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반면에 자산재평가가 공공요금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지방의 상·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재평가는 1차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켜 총괄원가를 증가시키고, 2차적으로는 요금기저를 구성하는 평균가동설비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성식 등 2004).²⁾

또한 지방공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게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은 자산과 부채 평가의 용이성에 치중함으로써 평가규정의 실제 적용가능성은 높으나 이론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산과 부채의 실제 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자산재평가제도를 참조하되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제도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학계와 관련업계간에 제기되고 있는 논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 2장은 지금까지의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민간부문과 지방공기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 3장은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자산평가 및 재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항별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쟁점을 정리한다. 제 4장은 우리나라 자산재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민간부문과 지방공기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자산재평가 존재 논쟁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 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1) 13개 국가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 5개 기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 8개 기관에서는 2000년말까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말까지 전국 306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의 상·하수도사업만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의 규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해 자본비용이 계산되지 않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 11조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총괄원가계산시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자산재평가제도의 쟁점

본 장에서는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민간부문과 지방공기업부문에 구분하여 살펴 본 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자산평가 및 재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항별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쟁점을 정리한다.

1.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자산재평가제도의 선행연구는 주로 민간기업부문을 대상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자산재평가제도 및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는 이 제도의 공과를 논하는 규범적 연구, 실태조사, 재평가 실시가 실시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혹은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조현연, 1987; 허성관·정신작, 1990). 이러한 연구들은 나름대로 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공헌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동기로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몇 편의 연구가 기업의 재평가 실시동기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실시하였다(송인만·최관, 1995). 이 연구들은 가능한 많은 재평가 동기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자산재평가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인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효과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산재평가제도는 자산재평가법의 목적 중 재무구조 개선 목적에는 기여했다는 증거(정재원 1996)와 기여하지 못했다는 증거(박종원 등 2001)가 각각 제시되었지만 미래경영성과의 향상, 신규투자의 촉진, 자본비용의 감소, 그리고 재평가를 통한 조세감면효과의 경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검증결과가 나타났다(정운오 1997, 박종원 등 2001). 아울러 투자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비교가능성과 신뢰성 등이 침해된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규정상의 불합리와 미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민간기업부문의 연구에 비해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지만, 그만큼 지방공기업분야의 자산재평가문제가 학계의 관심을 끌만큼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대부분 민간기업 회계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산재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도의 기준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윤순석 등(1998)은 지방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책들을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자산재평가제도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금인상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만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격 또는 요금결정이 영업성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영·도시개발사업 및 의료원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마 상하수도사업의 경우는 독점기업이어서 시장경쟁의 위협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경쟁관계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2.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제도의 쟁점

1) 자산평가 및 재평가의 목적 불명확

현행 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에서는 자산평가와 자산재평가를 수행하는 목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황성식 등 2004). 자산평가는 (지방)공기업이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할 때 자산과 부채를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자산재평가는 자산평가후 자산재평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지방)공기업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자산평가 및 자산재평가를 수행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산평가 및 재평가자산의 범위 산정 및 방법 등이 계속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2) 자산재평가의 동기

자산재평가의 동기에는 “(1) 가격산정의 목적”과 “(2)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평가 목적”이 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여도 무방하지만,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가격산정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발생한다.³⁾ 여기에

3)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현재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평가보다는 요금산정이 더 중요한

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계속 실시여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된다.

3) 자산재평가의 실시방법

자산재평가의 실시방법에 따른 문제는 2가지, ① 주기적 실시 여부와 ② 강제 혹은 선택적 실시 여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5년마다 실시)에 의하는 방법은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평가를 강요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산재평가 실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를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후자인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때 ‘강제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재평가의 실시 여부를 지방공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무조건 자산재평가를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자산재평가의 실시 여부를 지방공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⁴⁾.

4) 재평가적립금의 처분한계

현행 자산평가요령 제 19조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3가지, 즉 ① 원시자본금에의 전입, ②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③ 외화환산차손의 금액과 상계 중 하나의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둬으로써, 누적기타포괄손익의 처분 용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⁵⁾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평가가 중요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예를 들어 물가지수를 고려하여(예: 생산자물가지수가 25% 이상 상승한 경우 등)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방공기업이 자산재평가의 실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은 지방공기업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방공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를 지방공기업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 자산재평가 실시여부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며, 자산재평가의 실시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지방공기업과 실시하지 않은 지방공기업간의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기업 자산평가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안)에는 누적기타포괄손익의 구체적인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자산평가요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고정자산 감액손실 및 평가손실

현행 지방공기업 자산평가요령이나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서는 고정자산의 폐기손실, 감액손실 및 평가손실 등 고정자산을 평가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고정자산의 비효율적 관리, 불용자산 등으로 인한 비용을 일반 수요자에 전가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현재는 자산재평가에 대해서 평가증만을 인정하고 평가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산평가요령 중 “자산평가”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부화된 자산 및 불용자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진부화된 자산 및 불용자산의 정의 및 파악기준·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평가감을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6) 자산재평가 결과의 요금산정에 반영

자산재평가 결과를 요금산정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가지 문제, 즉 ①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의 증가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것을 요금산정에 반영하는가(영업비용에 포함하는가)의 여부와 ② 재평가적립금을 자본비용계산시(요금기저 계산시)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⁶⁾

7) 시행규칙결산지침의 개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및 결산지침의 개선방안에 따른 문제는 2가지, ① 경영한계성의 원가반영 여부와 ② 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영의 한계성으로 인한 비경상적인 부분이 원가에 반영되어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의 비효율적인 관리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이 요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결산 시에 (i) 가동중지 중인 감가상각비, (ii) 재고자산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 (iii) 미수금의 대손상각비, (iv) 외화환산손익을 영업비용 혹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경영의 한계성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이를 모두 총괄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후자인 경우에는 변경된 기업회계기준⁷⁾에 의하면 지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성식 등(2004) 참조.

7)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성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은 수선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에서 삭제하였다. 그 대신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같은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여, 관련 유형자산과는 구분 가능한 별개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회계상으로도 관련 유형

방공기업에서도 부채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수선충당금의 적립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Ⅲ. 우리나라의 자산재평가제도

1. 민간기업부문

우리나라의 자산재평가제도는 물가수준의 변동이 심한 기간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여 적절한 수준의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이익의 과대계상과 이로 인한 과다한 법인세 및 배당지급을 통한 기업 富의 사외유출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자본의 유지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1월 2일에 법률 제 468호로 제정·공포된 ‘재평가법’을 계기로 기업실무에 도입되었다. 재평가법은 그 해 1년 간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출발하였다.

1962년 5월에는 ‘자산재평가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2년간(1962년 5월~1964년 4월)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 들어 3월에 ‘자산재평가법’이라는 명칭으로 영구법으로 제정된 후, 1974년 12월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976년 12월에 제2차 개정, 1983년 12월에 제3차 개정, 1987년 11월에 제4차 개정, 1990년 12월에 제5차 개정, 1998년 4월에 제6차 개정, 1998년 5월에 제7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7차례의 개정과정을 겪으면서 40년 넘게 사용되어 오던 자산재평가제도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자산재평가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 결여를 주된 이유로 그 유용성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10월말에 IMF금융·외환위기라는 경제대란을 겪게 되었고, IMF금융·외환위기가 고조된 1998년 4월 10일에 국회는 전격적으로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의 초점은 토지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여 토지의 재평가를 크게 확대한 점

자산과는 상이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수선충당금이 재무회계 개념체계상의 부채의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사용기간 중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여 건물·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광업권·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산재평가를 인정한 점이다. 그리고 자산재평가제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뜻을 박았다. IMF 외환위기사태로 어려움을 겪게된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일거에 양호한 구조로 바꾸어주고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100)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산재평가제도는 IMF의 환란위기가 도래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⁸⁾. 자산재평가로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자본계정이 증가하여 재산상태가 양호해지고 부채비율도 크게 좋아진 것이다.

이 결과 IMF의 자매기관인 IBRD은 자산재평가로 인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다. 이처럼 40년 넘게 사용된 자산재평가제도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 배경은 1997년 10월말에 발생한 IMF금융·외환위기 과정에서 기업이 실시한 자산재평가가 고의적 장부조작으로 지적되고, 또한 국제회계조류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IMF와 IBRD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2. 지방공기업부문

우선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수도, 도시철도, 자동차운송, 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의료사업 등이 지방공기업의 주요 사업영역이 된다. 2000년 말까지 파악된 전국의 지방공기업 수는 총 3백 6개로서 총 자본금은 25조 7천억원, 직원 수만도 4만 8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2001년도 세입은 14조 3천억원, 세출은 15조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8)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비율을 양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산재평가 이외에도 상호출자를 이용하였다. 상호출자는 재벌기업내의 계열회사간에 주식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자본을 늘려 전체 재벌기업의 재무구조와 부채비율이 양호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산재평가와 상호출자로 재무구조와 부채비율을 양호하게 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실질적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기업을 곱게 포장하여 멋있는 기업으로 표시하는 또 하나의 분식결산의 형태로 비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은 다양한 경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업”은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을 관장하며 행정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 수가 1백75개로 가장 많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공단) 또는 50% 이상(공사)을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2000년말 현재 지방공단은 모두 33개가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을 맡고 있다. 지방공사는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등 63개가 있다. 이밖에 지자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주식회사도 35개 사나 된다.

이제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산재평가가 실시되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합법적인 자산재평가제도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자산평가요령(99.3.30 훈령 제21호)에 의하면, 자산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단순히 “평가”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가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재평가”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후 자산평가를 매 5년마다 다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기업자산가액을 현실에 맞는 가액으로 재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의 재평가기준일은 자산재평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해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자산평가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새로 적용할 때의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와 지방직영기업의 보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재평가로 구분하되, 그 세부평가기준 방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9조 3항).

둘째, 민관합작기업의 경우이다(윤성식, 1998).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한 가지 수단으로 민관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재정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다. 즉 지방정부가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공기업을 설립하여 수입농산물문제와 무공해농산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이 분야에 있어 매우 앞서가고 있으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전액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만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기업운영방식에 의존하며 공익성의 유지를 위하여 공무원을 공기업에 파견하여 통제를 한다. 대형 백화점조차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고 사기바겐세일을 벌이는 현시점에서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므로 민관합동사업이 효율성(배분적 효율성과 생산·기술적 효율성)과 공익성의 조화점을 찾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면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고 부족한 자본을 보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공익성의 보장은 지방정부가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므로 민관합작기업은 최근에 특히 각광을 받고 있다. 민관합작기업에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통제를 하고 기업은 경영에 주로 참여케 함으로써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특별회계 혹은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데 만약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고 있다(지방재정법 제 15조 제 1항). 다만 이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 15조 제 2항).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단체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인데 이러한 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동출자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경우 지방정부의 출자지분과 민간지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산재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이다(정진필 등, 2003). 경영이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통한 공공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말 공기업의 민영화대책을 발표하여 1998년에는 공기업 11개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중 6개사에 대한 민영화 실적을 보인 바 있다.⁹⁾

9) 공기업의 민영화문제는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과 공기업의 비효율에 대한 두 가지 가설, 즉 공기업 존속가설과 공기업 민영화가설이 있다. 먼저 공기업 존속가설에 의하면,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작으므로 여전히 공기업은 존립의 가치가 있다. 비록 공기업은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더라도 존속시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설에 의하면,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므로 민영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비록 시장의 실패는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특히 엄격한 예산관리나 책임경영관리체제의 부재로 인해 무분별한 정책사업의 집행에 따른 예산낭비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기업처럼 도산하지 않은 채 손실이 정부 등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의 지급 형태로 보전되는 폐단이 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실패에는 규제·조세·보충금 등으로 대응하고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기업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설립되는 공기업은

공기업의 민영화 측면에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윤성식, 1998). 민영화는 자산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혜가 주어지기 쉽다. 특혜를 주는 행위는 국가예산에 추가되는 재원의 액수를 줄이는 행위이므로 국가예산의 횡령이나 다름없는 범죄행이다. 특혜를 주는 행위를 주관의 차이라든가 시각의 차이로 변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현금 100억원을 훔친 행위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관료들이 특혜를 주어 현금 100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줄여준 행위는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지도 모른다. 아마 100억원을 줄여주고 10억원의 뇌물을 받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액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차원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가가 문제이다. 동일하게 100억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며 똑같은 100억원의 횡령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자산을 민영화시점에서 다시 평가하여 정확한 순자산을 평가한 다음에 순자산의 액수만큼의 대가를 받고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액수는 잘못된 정보이기 쉬우므로 민영화시점에서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 10년 전에 10억원을 주고 취득한 부동산이 기업의 재무제표 상에는 여전히 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이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한다면 매우 싼 값에 공기업을 매각하는 결과가 된다. 민영화 시점에서 이 부동산은 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00억원이 될 수도 있다. 민영화시점에서 이렇게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도 이렇게 자산재평가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을 자아내 언론 기관에 보도되었던 사건도 있었다.

IV. 자산재평가제도의 존폐 논쟁

지금까지 자산재평가제도의 존폐에 관한 연구 역시 주로 민간기업부문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결국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에 비해 공

대부분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경제에 미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거나,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더라도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이 더 크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민영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이나 지방공기업부문에서는 최근에 오면서 논의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1. 민간기업부문

1) 존속론자의 입장

존속론자들의 입장은 자산재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회계수치의 속성이 임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자원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유발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갖는 경제적 의의를 “자산재평가제도는 전후극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던 1960~70년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방대한 자금지원의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1980년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 양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향후 법 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영권확보를 지원하는 주요한 조세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결과 자산재평가제도의 존속론자들이 주장하는 장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광운 1994, 신찬수 1995, 전춘옥 1995).

첫째,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현실화하여 이익의 과대표시를 방지함으로써 과대표시된 명목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고율의 배당과 법인세, 그리고 종업원의 임금인상 요구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원가계산을 함으로써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율 계산에 반영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재평가차익의 내부유보를 통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재무구조 건전성이 높아질 경우 사채발행한도의 증가와 같은 기업의 부채조달능력이 확대되고, 자본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평가를 함으로써 유형자산처분차익을 축소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법인세율이 자산재평가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될 수 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지 않고 처분하면 처분이익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재평가 후 처분하면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세(3%)를 납부하더라도 처분차익이 훨씬 줄어들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재평가 후의 부담세액이 줄어든다. 그리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져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를 근거로 기부금, 기밀비, 접대비 등의 손

금한도액이 증가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자산재평가는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산재평가로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경우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반면, 무상증자가 주식시장에서 호재(good news)로 작용하여 주가 하락 비율이 발행주식수의 증가비율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주식의 시가총액은 증가하게 되어 적대적인 인수합병의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며, 이를 촉매제로 유상증자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2) 폐지론자의 입장

폐지론자들은 현행 자산재평가제도가 특수한 경제환경에서 채택되었던 초기형 재평가제도로써 그 내용이 특수하여 외국의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의 국제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창업주 또는 대주주 등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등 부의 분배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건전한 회계제도의 발전을 저해하지 때문에 이 제도는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정용근 1996).

폐지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자산재평가제도의 단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차후 배당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재평가금액의 검증가능성 결여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해친다.

셋째, 자산재평가로 인해 자산총액과 자기자본의 장부가액이 변화하므로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과 실시하지 않은 기업간 혹은 재평가 실시 전과 실시 후의 기간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자산재평가제도의 현실적인 운영상의 단점으로서 기업의 자산재평가 대상이 토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1993년의 경우를 보면 전체 재평가액 중에서 토지의 비중이 80.4%를 차지하고 있다(현진권 1995). 자산재평가의 주목적이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절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익의 과대계상과 이로 인한 법인세와 배당의 과다지급을 방지하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재평가의 주 대상이 비감가성자산인 토지에 집중될 경우 재평가의 주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그간 자산재평가는 재무구조의 개선효과와 함께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규모의 확대와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영합

리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산재평가제도의 악용, 법적 수혜의 불공평,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유용성 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부의 공정배분사의 문제점, 물가변동회계로서 불완전성 등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2. 지방공기업부문

1) 존속론자의 입장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이다. 존속론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자산재평가의 동기는 ① “가격산정의 목적”과 ② “재무/경영성과 평가 목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경영성과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폐지하여도 무방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가격산정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2가지 관점, 즉 존속기한과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황성식 등 2004). 먼저 1) 존속기한의 제한문제인데, 이 제도를 무한정 존속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재무/경영성과 평가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비효율화에 따른 자산 감액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재평가의 필요성이 해소될 때에는 민간기업분야와 같이 이를 폐지하는 편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적용범위의 제한문제인데, 가격산정의 목적이더라도 이의 남용이 정당화되면 곤란하다. 가격인상요인을 분석할 때에는 자산재평가액이 가격기저에 포함된 부분을 별도로 공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지방공기업은 주기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를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자산의 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된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평가를 인정한다면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국한하여야 하며, 가격인상을 위한 원가계산 자료의 제공시 얼마만큼이 재평가차액에 기인한 것인가를 명기하여야 한다.

2) 폐지론자의 입장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제도 폐지론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부 지방공기업

중에는 경영성과의 부진과 재무구조의 악화를 요금인상을 통하여 만회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⁰⁾ 경영부실로 인하여 2000년말 파산된 84개 지방공기업이 떠안고 있는 총부채는 9조 3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이 파산한다면 그 피해는 지자체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돼 지방재정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상하수도사업의 현행 회계제도 중 특이한 것이 요금 인상 수단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자산재평가제도이다. 또한 일부 지방공기업 회계제도 중 민간기업회계와 다른 특이한 점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형식적인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39조 3항). 이에 따라 직영지방공기업에서는 물가정보지에 보고된 물가변동정보를 이용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물가지수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윤순석 등, 1998). 그 결과 현행회계제도의 근간인 역사원가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자산이 순실현가능가치 이상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자산평가의 상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조경목적 등으로 조성한 나무까지 재평가함으로써 자산이 과대하게 고평가되고 있다. 나무는 판매목적이 아니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자산이다. 따라서 재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토지, 건물, 사업용시설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기업 중 지방공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직영기업형태의 지방상수도사업과 유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직영기업형태의 지방공영개발사업과 공사형태의 도시개발공사와 유사) 및 농수산물유통공사(공사형태의 시장관리공사)의 자산재평가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황성식 등 2004), 독자적인 자산재평가 규정이 없으며,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0년 이전까지 실시해오던 자산재평가를 현재는 폐지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혀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일부 지자체들은 99년 4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 인가권이 행자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양된 점을 악용하여 지자체에서 구조 조정된 인력을 지방공기업에 흡수하기도 한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부실 지방공기업의 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설립되고 나면 제아무리 부실이 누적돼도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표심(票心)을 의식해 지방공기업을 자발적으로 없앨 가능성은 낮다.

V. 결 론

본 논문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민간기업의 ‘자산재평가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2001년부터 폐지된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제도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부문에서 자산재평가제도의 존폐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평가 자산가액을 활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증액시켜 요금 인상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때 민간기업의 자산재평가와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이를 획일적으로 일시에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존속기한과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현실의 자산평가(및 재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자산재평가제도를 악용하여 비전문경영자(자격미달인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들에 의한 만성적인 경영성과의 부진과 재무구조의 악화 실상을 왜곡하거나 부실경영의 책임을 은폐·조작하여 민영화의 지연을 따른 경영혁신의 기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등 과거의 폐습이 근원적으로 제거되어 지방공기업의 자산평가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능한 한 지방공기업의 자산재평가제도에 대한 존속론자와 폐지론자의 견해를 논리적 근거 위에서 관련쟁점을 항목별로 연계하여 반론을 펼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선행연구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전체 윤곽만을 그리고 만 셈이다. 향후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패문제, 지배구조의 변경 및 민영화를 통한 경영혁신 등의 이슈를 포함한 관련연구가 진행될 때 본 연구주제에 대한 풍부한 후속연구가 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운,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회계 제30호, 한국공인회계사회, 10, 1994, pp.49-63.
 박종원·장욱·전규안, “자산재평가가 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17호,

- 2001, pp.41-67.
- 송인만 · 최관, 자산재평가의 동기와 주가반응, 경영학연구 제24권 제3호, 8, 1995, pp.175-211.
- 신찬수, 자산재평가제도와 특별상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움, 한국회계학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10. 4, 1995, pp.45-68.
-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8.
- 윤순석 · 위준복 · 문환규, 지방공기업의 회계제도 개선과 경영합리화 방안, 회계저널 제47권 제1호, 1998, pp.215-247.
- 전춘옥, 자산재평가제도에 대한 재평가, 세무학연구 제6호, 7, 1995, pp.231-272.
- 정용근, 우리나라의 자산재평가제도 폐지론, 회계저널 제5권 제2호, 12, 1996, pp.59-82.
- 정운오, 자산재평가의 세금효과와 최적 실시시점, 경영학연구 제26권, 제2호, 5, 1997, pp.355-387.
- 정재원, 자산재평가의 경제적 실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 연구 제7호, 1, 1996, pp.233-262.
- 정진필, 김일태, 유동국, 계약과 조직의 경제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 조현연, 자산재평가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17권 1호, 1987, p.9.
-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
-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2001.
-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2002.
- 허성관 · 정신작, 자산재평가 공시의 정보효과와 그 요인, 회계학 연구 제 10호, 9, 1990, pp.19-33.
- 현진권,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 황성식, 정진필, 김정교, 김길복, 백승천, 전규안, 지방공기업 자산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리회계학회, 2004.

<Abstract>

A Dispute on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f Asset Revaluations System in Local Public Enterprises

Chin-Pil Chung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ltae Kim

Professor, Dep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asset revaluation act, asset revaluation system of private enterprises gives rise to the ques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reliability and accounting information compar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maintenance of asset revaluation system in local public enterprises since the system is abolished in 2001.

These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one of main issue of maintenance of asset revaluation system is used as a mean of an rise in user charges by increasing depreciation cost through revaluating asset values. We reconsider asset revaluation system indiscreetly implemented by local public enterprises. Our analysis also reveals that one does not uniformly abolish this system at a time but alternatively implements in suitable local public enterprises by restricting the duration and range of application because the purpose of asset revaluation in private enterprises is different from that in public enterprises.

Key words : maintenance of asset revaluation systems, asset revaluation act, private enterprises, local public enterprises